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배 정 미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명 개정
 - 현행 : 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
 - 개정 :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에 맞게 조문 정비
 - 현행 : 읍면동사무소소재지
 - 개정 :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
- 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(안 별표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구 춘 서

○ 본 『구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, 시청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